<bof>

1. [%1](#1 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3 Special taxations for profit corporations)[n]
   1. [1](#1 비영리법인의 과세의무)(#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과세의무)(#3 Tax obligations for non-profit corporations)[n]
      1. {1}(#1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법§4③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또한 법법§55의2(법법§95의2 포함)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대부분 영리법인과 동일하나, 과세소득의 계산･과세방법 등에 있어 과세상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4조③에서 열거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3 In the case of non-profit corporations, corporate tax is levied on income generated from the business businesses listed in Article 4③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y must also pay corporate tax on capital gains on sales of land and others.){r3<n>,r5<n>,r6<n>}
   2. [2](#1 비영리법인의 범위)(#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3 Scope of non-profit corporations)[n]
      1. [3](#1 법인세법§2(2) 및 같은 법 시행령§2에서 규정하는 법인)(#2 법인세법 제2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입니다)(#3 Corporations defined in Article 2(2)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T,r1<n>]
         1. {1}(#1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3 =Domestic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n}
         2. {2}(#1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내국법인)(#2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인 내국법인)(#3 =Domestic corporations with purposes similar to those specified in Article 32 of the Civil Act and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School Act.){n}
         3. {3}(#1 =법령§2에서 열거하는 조합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합니다.)(#2 =법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법인 외에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됩니다.)(#3 =Except for the corporations listed in Article 2 of the law, corporations that can distribute profits are excluded.){n}
         4. {4}(#1 =국세기본법§13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2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3 =Organizations considered corporations under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n}
      2. [4](#1 국세기본법§13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2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3 Organizations considered corporations under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n]
         1. [5](#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2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3 Organizations considered corporations by default)[T,r1<n>]
            1.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경우 법인으로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3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and when income is not distributed to members, the organization is considered a corporation and the tax laws apply.){n}
            2. {2}(#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국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국가에 등록한 사단 등 등기되지 않은 단체)(#3 =Organizations that have not received government permission or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r registration){n}
            3. {3}(#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공익을 목적으로 금품을 낸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3 =Foundations with basic assets paid in for public purposes that are not registered.){n}
         2. [6](#1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2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3 Organizations considered corporations by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tax office)[T,r1<n>]
            1. {1}(#1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2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3 =Organizations that have applied for approval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and obtained approval are considered corporations, and the tax laws apply.){n}
            2. {2}(#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 =법률적인 단체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3 =Legal entities with regulations on their organization and operation, with appointed representatives or administrators){n}
            3. {3}(#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2 =법률적인 단체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3 =Independent ownership and management of income and property by legal entities){n}
            4. {4}(#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2 =법률적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눠주지 않을 것)(#3 =Non-distribution of income from legal entities to members){n}
            5. {5}(#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법률적인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에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3 =If an entity has received approval as a legal organization, it cannot change its status from a corporation to a resident until the business year containing the approval date and the business year up to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at business year.){n}
   3. [7](#1 수익사업의 범위)(#2 수익사업의 범위)(#3 Scope of profit-making businesses)[n]
      1. [8](#1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법법§4, 법령§3))(#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3 Scope of profit-making businesses subject to corporate tax for non-profit corporations)[n]
         1. [9](#1 수익사업의 범위(법법§4, 법령§3))(#2 수익사업의 범위)(#3 Scope of profit-making businesses)[n]
            1. {1}(#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22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열거되어있는 사업은 제외합니다.)(#2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열거되어있는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3 Manufacturing, construction,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other profit-making businesses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excluding those listed.){r10<n>,r11<n>,r12<n>,r13<n>,r14<n>,r14x1<n>,r14x2<n>}
         2. [10](#1 수입이 발생하지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2 수입이 발생하지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3 Businesses that make profit but are excluded from profit-making businesses)[T,r9<n>]
            1. {1}(#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2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3 =Agriculture other than livestock farming (including livestock-related services) and landscape management and maintenance businesses){n}
            2. {2}(#1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2 =연구개발업 단,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하는 것은 수익사업 입니다.)(#3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es. However, receiving compensation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 contracts, are considered profit-making businesses.){n}
            3. {3}(#1 =선급검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 =선박을 검사하는 용역)(#3 =Ship inspection services){n}
            4. {4}(#1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사업)(#3 =Operation of kindergartens,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n}
            5. {5}(#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제외)사업)(#2 =외국교육기관 사업)(#3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n}
            6. {6}(#1 =교육서비스업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경영하는 사업)(#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경영하는 사업)(#3 =Operation of international schools operated by non-profit corporations){n}
            7. {7}(#1 =교육서비스업중 ｢평생교육법｣ §31④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33③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2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3 =Businesses operating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in the form of specialized universities and remote universities.){n}
            8. {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2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3 =Social welfare businesses provided by social welfare facilities.){n}
            9. {9}(#1 =연금 및 공제업 중 법령§3①(5)에서 규정하는 사업)(#2 =연금 및 공제업 중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3 =Businesses specified by law among pension and mutual-aid businesses){n}
            10. {10}(#1 =사회보장보험업 중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2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3 =Medical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usinesses){n}
            11. {11}(#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 가치세법§26①(18)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3 =Services provided by religious organizations that are exempt from value-added tax){n}
            12. {12}(#1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법령§3①(8)에서 규정하는 사업)(#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3 =Businesses specified by law among financial and insurance-related businesses){n}
            13. {13}(#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2 =대한적십자가 행하는 혈액사업)(#3 =Blood-related businesses conducted by the Korean Red Cross){n}
            14. {1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 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사업에 한함))(#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3 =Businesses operating the Home Reverse Mortgage Guarantee System){n}
            15. {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의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2 =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의 자에게 창업비 등을 대출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3 =Small-scale credit lending businesses that provide start-up expenses and loans to legal recipients and underprivileged class, etc.){n}
            16. {16}(#1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2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3 =The business providing school facilities to operators of foreign schools){n}
            17. {17}(#1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2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심사사업)(#3 =Assessment businesses of sports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the Korea Sports and Olympic Committee and the World Taekwondo Headquarters.){n}
            18. {18}(#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3 =Operations related to waste disposal carried out b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Management Corporation.){n}
            19. {19}(#1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사업)(#3 =Student loan business of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n}
         3. [11](#1 소득세법§16①에 따른 이자소득)(#2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3 Interest income according to the Income Tax Act)[n]
            1. {1} (#1 소득세법§16①에 따른 이자소득)(#2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3 Interest income according to the Income Tax Act){ r9<n>,r11<n>,r12<n>,r13<n>,r14<n>,r14x1<n>,r14x2<n>}
         4. [12](#1 소득세법§17①에 따른 배당소득)(#2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3 Dividend income according to the Income Tax Act)[n]
            1. {1}(#1 소득세법§17①에 따른 배당소득)(#2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3 Dividend income according to the Income Tax Act){ r9<n>,r11<n>,r12<n>,r13<n>,r14<n>,r14x1<n>,r14x2<n>}
         5. [13](#1 주식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2 주식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3 Income from the sale of stocks and similar assets)[n]
            1. {1} (#1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2 주식이나 아직 발행하지 않은 새로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인 등에 출자한 지분을 매도함으로 인한 수입)(#3 Income from the sale of rights to purchase stocks or new stocks hat have not yet issued, or income from the sale of shares invested in corporations.){ r9<n>,r11<n>,r12<n>,r13<n>,r14<n>,r14x1<n>,r14x2<n> }
         6. [14](#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2 유형자산 및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단, 법인이 설립 목적으로 삼고있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제외합니다)(#3 Income from the disposal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However, income from the disposal of assets used for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s establishment purpose is excluded)[T, r9<n>]
            1. {1}(#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봄.)(#2 =유형자산 및 형태가 없는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법인이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봅니다.)(#3 =Even if there is incidental income such as entrance fees and admission fees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t is considered as assets used by the corporation for its stated purpose.){n}
            2. {2}(#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이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옮긴 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옮길 때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3 =When a non-profit corporation transfers an asset belonging to a profit-making business to a non-profit-making business and then disposes of that asset, the acquisition cost of the asset is deemed to be the price formed in the market when it was transferred to the non-profit-making business.){n}
         7. [14x1] (#1 자산 양도로 생기는 수입)(#2 자산 양도로 생기는 수입)(#3 Income generated from the transfer of assets)[n]
            1. {1} (#1 소득세법§94①(2) 및 (4)에 따른 자산 양도로 생기는 수입)(#2 법에 따른 자산 매도로 생기는 수입)(#3 Income generated from the sale of assets as stipulated by law){ r9<n>,r11<n>,r12<n>,r13<n>,r14<n>,r14x1<n>,r14x2<n> }
         8. [14x2](#1 채권 등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2 채권 등을 매도함에 따른 이익)(#3 Profits from selling bonds and similar assets)[n]
            1. {1} (#1 소득세법§46①에 규정하는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2 법에서 규정하는 받을 돈을 다른 자에게 판매함에 따라 생긴 이익. 단, 받을돈에 대해 이자가 생기지만 해당 이자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The profit generated from selling receivables as regulated by law to another party. However, if interest accrues on the receivables, and that interest is not subject to corporate tax, no tax will be imposed.){ r9<n>,r11<n>,r12<n>,r13<n>,r14<n>,r14x1<n>,r14x2<n> }
      2. [15](#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21.2.17. 개정))(#2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3 Contents of social welfare businesses excluded from profit-making businesses)[T,r10-8<n>]
         1.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2 =법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3 =Social welfare businesses provided by social welfare facilities falling under any of the categories specified by law.){n}
         2.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2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3 =Social welfare businesses provided by social welfare facilities falling under any of the categories specified by law.){n}
         3.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2 =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3 =Central Self-Sufficiency Foundations and Local Self-Sufficiency Foundations as stipulated by law){n}
         4. {4}(#1 =｢아동복지법｣ §52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2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3 =Child welfare facilities as stipulated by law){n}
         5. {5}(#1 =｢노인복지법｣ §31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2 =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합니다.))(#3 =Elderly welfare facilities as stipulated by law (excluding specialized elderly hospitals)){n}
         6. {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2 =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3 =Elderly welfare facilities as stipulated by law (excluding specialized elderly hospitals)){n}
         7. {7}(#1 =｢장애인복지법｣ §58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63①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2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3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and production facilities for severely disabled operated by disability welfare organizations){n}
         8. {8}(#1 =｢한부모가족지원법｣ §19①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2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3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as stipulated by law){n}
         9. {9}(#1 =｢영유아보육법｣ §10에 따른 어린이집)(#2 =법에 따른 어린이집)(#3 =Kindergartens as stipulated by law){n}
         10. {1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2 =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3 =Support facilities and counseling centers for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s stipulated by law){n}
         11. {1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재활)시설)(#2 =법에 따른 정신요양(재활)시설)(#3 =Mental care (rehabilitation) facilities as stipulated by law){n}
         12. {1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2 =｢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3 =Sexual violence victim counseling centers and sexual violence victim protection facilities as stipulated by law){n}
         13. {13}(#1 =｢입양특례법｣ §20①에 따른 입양기관)(#2 =법에 따른 입양기관)(#3 =Adoption agencies as stipulated by law){n}
         14. {1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3 =Counseling centers and protective facilitie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as stipulated by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n}
         15. {15}(#1 =｢다문화가족지원법｣ §12①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 =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3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s stipulated by law){n}
         16. {16}(#1 =｢건강가정기본범｣ §35①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3 =Health family support centers as stipulated by law){n}
      3. [16](#1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 예규)(#2 법에서 정한 이익을 만들기 위해 벌이는 사업의 범위)(#3 The scope of business conducted to generate profits as defined by law)[n]
         1. [17](#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 해당여부)(#3 Whether the business is for the benefit of a non-profit corporation)[n]
            1. {1}(#1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1-법인-1261,2021.04.08.))(#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령한 정부･지자체의 돈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3 When a non-profit corporation operates a hazardous material inspection business requested by the government, and any profits or losses arising from this business are attributed to the government, no corporate tax is levied on this business. Furthermore, money received free of charge by a non-profit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pursuing its mission, from the government or local authorities, is not considered income earned from profit businesses.){r10<n>}
         2. [18](#1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여부)(#2 학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세금 부과여부)(#3 Whether taxes are imposed when a school disposes of real estate that was used for leasing purposes)[n]
            1. {1}(#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2016.8.16.))(#2 법에 따른 학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동 부동산 판매소득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전액을 학교 고유의 목적 사업을 위해 적립금의 형태로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비용으로 처리한 적립금은 5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해야합니다.)(#3 Income generated from the sale of real estate used for leasing purposes by a school is subject to taxation as stipulated by law. However, the full amount of the sale proceeds may be treated as expenses in the form of reserves for the school's specific business purposes, and the reserves must be used for the specific purposes within five years.){r14<n>}
         3. [19](#1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세금 과세 대상 여부)(#3 Whether taxes are imposed when a non-profit corporation receives real estate as a gift without charge)[n]
            1. {1}(#1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2.17.))(#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자산을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세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When a non-profit school corporation uses assets received for free from others but unrelated to its business for profit-generating businesses, those assets are not subject to tax.){r10-4<n>}
         4. [20](#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타소득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후 신고하지 않은 다른 소득을 신고 시에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Whether non-profit corporations can be subject to penalty tax for unreported income after filing interest income)[n]
            1. {1}(#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만 “법인세･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 누락된 수익사업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36,2015.12.29.))(#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세금 신고 시 이자소득만 신고하고 세금 신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 누락된 수익사업 부분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If a non-profit corporation engaged in profit-making businesses files only interest income when filing taxes and subsequently files the omitted profit-making portion of income after the tax return period has passed, a non-reporting penalty tax will be imposed.){r77<n>}
         5. [21](#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누락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누락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3 Whether it's possible to file a reassemssement claim for non-profit corporation's interest income omission)[n]
            1. {1}(#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594, 2013.10.31.))(#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미리 세금을 징수한 이자소득이 있고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기한내에 추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리 세금을 징수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변경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3 In the case of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with pre-held interest income, if the additional filing is not made within the filing deadline, it is considered that the obligation to pay tax using the pre-withheld tax method has been concluded, and later amended filing cannot be accepted.){r74<n>,r75<n>}
         6. [22](#1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지 여부)(#2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이 수익을 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인지 여부)(#3 Whether the money received for the settlement of actual expenses is the income generated from for-profit businesses)[n]
            1. {1}(#1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607, 2013.10.31.))(#2 실제로 드는 비용을 정산 목적으로 지급받는 돈이 법에서 정한 사업에서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봅니다.)(#3 If money received for the settlement of actual expenses is related to businesses stipulated by law, it is considered income generated from for-profit businesses.){r9<n>,r17<n>}
   4. [23](#1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2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3 Taxation of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es)[n]
      1. [24](#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준비금에 대한 비용)(#3 Costs related to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the exclusive purposes of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n]
         1. [25](#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2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3 When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accounts for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as expenses)[n]
            1. {1}(#1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10%한도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법§29).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면제, 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를 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법§29⑧,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2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한 목적사업 또는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3 If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recognizes expenses within the limits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conducting its businesses or donations, it can be recognized as expenses within the limits. However, this cannot be applied when there is no tax liability for income generated from profit-making businesses.){n}
         2. [26](#1 준비금 설정 대상법인)(#2 준비금 설정 대상법인)(#3 Corporations eligible for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n]
            1. [27](#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방법)(#2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준비금의 설정방법)(#3 How to establish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the exclusive purpose)[n]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법법§29ⓛ),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법법§29②).)(#2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준비금은 장부에 기록하는 사항이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기록하고 이익 중 일부를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비용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3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are required to be recorded in the books; however, in the case of a non-profit corporation undergoing an audit by a tax adjuster, if they record it in the tax reconciliation statement and allocate a portion of the income to a business preparation reserve for the stated purpose, it can be recognized as an expense.){r28<n>}

* + - * 1. [28](#1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2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3 Corporations eligible for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n]

[29](#1 법인세법 규정)(#2 법인세법 규정)(#3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n]

{1}(#1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2 법에서 규정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내국법인)(#3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as stipulated by law){ r27<n>,r30<n>,r31<n>,r32<n>}

[30](#1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법인)(#2 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3 Entities considered as corporations under the law)[T,r27<n>,r29<n>,r31<n>,r32<n>]

{1}(#1 =법령§39①(1)에 해당하는 단체)(#2 =법령 제39조①(1)에 해당하는 단체)(#3 =Entities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①(1) of the law){n}

{2}(#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2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된 돈)(#3 =Money reserved for specific purposes established by law){n}

{3}(#1 =공동주택관리법§2①(1)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2 =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회의기구)(#3 =Resident representatives' meetings, tenant representatives' meetings, or similar meeting bodies for joint housing stipulated by law){n}

[31](#1 정비사업조합)(#2 정비사업조합)(#3 Redevelopment association)[n]

{1}(#1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특법§104의7②).)(#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In the case of a redevelopment association considered as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it is not eligible for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s.){ r27<n>,r30<n>,r29<n>,r32<n>}

[32](#1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2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법인)(#3 Associ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in the process of liquidation)[n]

{1}(#1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통칙 29-56…1).)(#2 법인세를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과 청산 중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은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3 Associations eligible for simplified corporate tax filing rules and non-profit corporations in the process of liquidation cannot recognize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as expenses.){ r27<n>,r30<n>,r31<n>,r29<n>}

* + - 1. [33](#1 준비금 설정한도(법법§29①))(#2 준비금 설정한도)(#3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limit)[n]
         1. [34](#1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2 수익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경우)(#3 In case of a deficit in for-profit businesses)[n]

{1}(#1 법인세법§29①(1)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각 목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법률 제13555호 부칙§4 단서))(#2 법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마이너스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3 In the case of a deficit in for-profit business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by law, expenses can be recognized up to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at deficit from the total income amount.){r27<n>}

* + - * 1. [35](#1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2 전액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3 Amounts eligible to establish as a business preparation reserve for the exclusive purposes)[T,r27<n>]

{1}(#1 =소득세법§16①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50% 준비금 설정 가능))(#2 =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단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은 50%까지만 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합니다.)(#3 =Amount of interest income according to the law. However, profits from cash lending can only be set up as a preparation reserve up to 50%.){n}

{2}(#1 =소득세법§17①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상증법§16 및 §48에 의해 상속･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제외))(#2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받은 금액. 단, 상증법에 의해 상속･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으로부터 나온 배당은 제외합니다.)(#3 =Amount received as dividends according to the Income Tax Act. However, dividends subject to inheritance or gift tax, and dividends derived from shares subject to inheritance or gift tax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e excluded.){n}

{3}(#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3 =Interest income generated from money lent by a non-profit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special laws to its members or association members){n}

{4}(#1 =조세특례제한법§74①에 규정된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2 =법에 규정된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3 =Income generated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of corporations specified by law){n}

* + - * 1. [35x1] (#1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과규정)(#2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해 준비하는 돈에 대한 규정)(#3 Income generated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of corporations specified by law)[T,e35<n>]

{1}(#1 2012.1.1. 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체(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상증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제외)에 대하여 100% 준비금 설정 가능)(#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전액 준비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 및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이익은 제외됩니다.)(#3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can be expensed for all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However, profits from cash lending and dividends generated from stocks included in inheritance or gift tax are excluded.){n}

* + - * 1. [36](#1 8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2 고유한 목적사업 준비금을 위한 비용으로 80%만 처리 가능한 소득)(#3 Income that can only be expensed at 80% for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s)[n]

[36x1] (#1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소득)(#2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3 Profit-making business income generated by corporations that spend more than 50% of the amount as scholarships)[n]

{1}(#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닌 기타 수익사업소득 (법법§29①))(#2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고유한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소득. 단,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소득은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3 Profit-making business income of corporations established by law, which spend more than 50% of the amount for scholarships for specific business purposes. However, income that can be fully expensed is can be accounted as expenses in full.){r27<n>,e36x2<n>}

[36x2] (#1 8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과규정)(#2 80%만 비용처리할 수 있는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 경과규정)(#3 Expenditure regulation for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s, which can only be accounted as expenses at 80%)[n]

{1}(#1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시 100% 준비금 설정 가능함(조특법§74①(8)))(#2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시 100% 준비금 설정 가능합니다.)(#3 When more than 80% of the expenditure amount is used for scholarships, 100%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can be set up.){e36x1<n>,r27<n>}

* + - * 1. [37](#1 50% 손금산입 대상소득)(#2 50% 손금산입 대상소득)(#3 Income subject to 50%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n]

{1}(#1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해당 사업연도의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 등－이월결손금－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 등－이월결손금－법에 따른 기부금)(#3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 Income generated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in the relevant fiscal year - Full amount of interest income eligible for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s - Carryforward loss - Donations according to the law){r27<n>}

* + - 1. [38](#1 준비금의 사용)(#2 준비금의 사용)(#3 Use of reserves)[n]
         1. [39](#1 준비금 사용잔액)(#2 준비금 사용잔액)(#3 Reserves remaining balance)[n]

{1}(#1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사업연도 이후 5년 이내에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합니다.)(#2 비용에 산입한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을 설정한 이후 5년 이내에 설립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에 이익에 포함합니다.)(#3 Within 5 years after establishing the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s or using them for designated donations i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y remaining balance will be included in the profit on the day of the 5th anniversary.){r40<n>,r41<n>}

* + - * 1. [40](#1 고유목적사업)(#2 고유한 목적사업)(#3 Specific purpose business)[n]

{1}(#1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3①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법령§56⑤).)(#2 고유한 목적사업이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①의 외의 사업을 의미합니다.)(#3 Specific purpose business refers to businesses that align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a non-profit corporation and excludes business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Article 3① of the Corporate Tax Law Enforcement Decree.){r39<n>,r42<n>,r43<n>}

* + - * 1. [41](#1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법령§56⑥)(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 등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2 고유한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 단, 유형자산 및 형태가 없는 자산을 취득 후 고유한 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3 Amount considered used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However, this excludes cases where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are acquired but not used for their specific primary purpose for more than 3 years and are subsequently disposed of)[n]

[42](#1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고유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형태가 없는 자산 취득비용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쓴 금액)(#3 Amount spent on acquiring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for direct use in specific purpose business, as well as labor costs, and other expenses)[n]

{1}(#1 공익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장학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서 제외합니다(법령§56⑪).)(#2 공익법인 투명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비용처리하는 장학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3 For the sake of transparency, in cases where scholarship corporations and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llocate more than 50% of income earned from profit-generating activities as reserves for their specific purposes and where the salaries paid to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uch corporations exceed KRW 80 million annually, the excess amount is not considered as expenses for the specific primary purpose, unless with the approval of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y.){ r39<n>,r40<n>,r43<n>}

[43](#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3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of the business of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special laws)[n]

{1}(#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비용으로 인식한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해 적립한 준비금.)(#3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accumulated by a domestic non-profit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special laws, which are recognized as expenses.){ r39<n>,r42<n>,r40<n>}

[4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2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빌려줌)(#3 Lending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specific business purposes to members free of charge)[n]

{1}(#1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61①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2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법에 따라 계상한 고유한 목적사업 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3 Amount lent free of charge by Nonghyup Central Cooperative Federation according to the law regarding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to its members.){ r39<n>,r40<n>,r42<n>}

[45](#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지급하는 금액)(#3 Amounts paid to the Deposit Insurance Fund and similar funds)[n]

{1}(#1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2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지급하는 금액)(#3 Amounts paid by Nonghyup Central Cooperative Federation, Fisheries Cooperative Federation, etc., to the Deposit Insurance Fund and similar funds.){ r39<n>,r40<n>,r42<n>}

[46](#1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업무 등에 지출하는 금액)(#2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업무 등에 지출하는 금액)(#3 Expenditure related to capital raising businesses related to Free International Cities)[n]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관련 토지 취득･비축을 포함),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업무 등에 지출하는 금액(2011.3.31.신설)(2011.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업무 등에 지출하는 금액)(#3 Expenditure related to capital raising businesses related to Free International Cities){ r39<n>}

[47](#1 의료기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2 의료기기 등 유형자산 및 형태가 없는 자산의 취득)(#3 Acquisition of medical equipment and intangible assets)[n]

{1}(#1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연구개발사업,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2 의료업을 영위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영리법인이 비용으로 인식한 고유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의료기기 등 유형자산 및 형태가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연구개발사업,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3 Expenditure on acquiring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such as medical equip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overseas medical expansion, recognized as expens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preparation reserves by non-profit corporations pursuing medical businesses.){ r39<n>,r48<n>,r50<n>,r51<n>}

[48](#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범위)(#2 유형자산 및 형태가 없는 자산 등의 범위)(#3 Range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etc)[n]

[49](#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범위))(#2 $(유형자산 및 형태가 없는 자산 등의 범위))(#3 $(Range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etc))[n]

{1}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47<n>,r49x1<n>}

[49x1](#1 지출분에 대한 적용시기)(#2 지출분에 대한 적용시기)(#3 Timing of application to expenditures)[n]

{1}(#1 연구개발사업은 ’14년 지출분부터 적용)(#2 연구개발사업은 2014년 지출분부터 적용)(#3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 is applicable from the expenditure made in 2014 onwards.){ e47<n>,r49<n>}

[50](#1 의료기기 등 사용금액의 처리방법)(#2 의료기기 등 사용금액의 처리방법)(#3 Treatment of expenses for the use of medical equipment, etc)[n]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의료기기 등 취득금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2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 중 의료기기 등 취득금액을 의료발전금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합니다.)(#3 Among the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the acquisition cost of medical equipment, etc., must be recorded separately as medical development funds.){ e47<n>,r49<n>,r49x1<n>,r51<n>}

[51](#1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2 $(의료발전금의 기록방법))(#3 $(Recording method for medical development funds))[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47<n>}

* + - * 1. [53](#1 준비금의 사용 순서 등)(#2 준비금의 사용 순서 등)(#3 Order of use of reserve, etc)[T,r39<n>]

[53x1](#1 당해연도 준비금)(#2 당해연도 준비금)(#3 Reserve for the current year)[n]

{1}(#1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2 법인의 고유한 목적사업 또는 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3 Amounts used for the corporation's specific purpose business or donations are considered to have been used from the previously accounted reserves.){n}

[53x2](#1 직전사업연도 준비금)(#2 직전사업연도 준비금)(#3 Reserve for the previous fiscal year)[n]

{1}(#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2 작년의 고유한 목적사업의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올해 고유한 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올해의 고유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3 Amounts spent on this year's specific purpose business, etc., exceeding the balance of last year's reserve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are considered to have been used as this year's reserve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n}

* + - 1. [54](#1 준비금의 익금산입)(#2 준비금의 이익 계상)(#3 Accounting for the income of reserves)[n]
         1. [55](#1 준비금 환입계상)(#2 준비금 환입계상)(#3 Accounting for the return of reserves)[n]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2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을 비용처리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준비금 잔액을 소득에 포함합니다.) (#3 If a non-profit corporation that has expensed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and encounters the reasons even before 5 years have passed, it includes the remaining balance of reserves in income.){r56<n>}

* + - * 1. [56](#1 준비금 환입계상 사유)(#2 준비금을 이익으로 처리하는 사유)(#3 Reasons for recognizing reserves as income)[T,e55<n>]

{1}(#1 =해산 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2 =해산 하거나 고유한 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3 =When dissolved or when all specific primary activities are terminated){n}

{2}(#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 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 되거나 법인에서 거주자로 변경된 때)(#3 =When an entity considered as a corporation has its approval revoked or changes its status to a resident within a corporation.){n}

{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2 =고유한 목적사업 준비금을 비용처리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한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3 =The remaining balance not used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etc., until the 5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were recognized as expenses.){n}

* + - * 1. [57](#1 준비금 설정 후 포괄양도하고 해산 하는경우)(#2 준비금 설정 후 사업 전체를 양도하고 해산 하는경우)(#3 When transferring the entire business and dissolving it after setting up reserves)[n]

{1}(#1 2011.1.1. 이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면서 법인의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준비금의 환입사유에서 제외됨(법법§29④))(#2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을 설정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사업을 다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에게 전체를 양도하고 해산하면서 법인의 준비금을 넘기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이익으로 환입해야하는 사유에서 제외됩니다.)(#3 When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transfers its entire business and dissolves to another non-profit corporation, passing on its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it is exempt from the reason to recognize the reserves as income.) {r55<n>,r56<n>}

* + - * 1. [58](#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상당액 법인세 추가납부)(#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상당액 법인세 추가납부)(#3 Corporate tax additional payment on the interest equivalent amount of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n]

{1}(#1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와 손금계상 후 5년 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는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법법§29⑦).)(#2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고유한 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을 이익에 포함하는 경우와 비용인식 후 5년 내 준비금을 환입한 경우는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3 When including the remaining balance of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not used within 5 years in income and when returning to reserves within 5 years after expense recognition, taxes must be additionally paid on the portion equivalent to interest.){r55<n>,r59<n>}

* + - * 1. [59](#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상당액 계산))(#2 $(고유한 목적사업준비금 이자 계산))(#3 $(Calculation of interest on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n]

{1}텍스트, 폰트, 라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r58<n>}

* + - 1. [61](#1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예규)(#2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예규)(#3 Tax-related regulations for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es)[n]
         1. [6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2 고유한 목적사업의 준비금을 비용 처리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3 When a non-profit corporation accounts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as expenses and does not recognize the received dividends as income)[n]

{1}(#1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 2017.09.25.))(#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법에 따라 고유한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비용처리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이익으로 봅니다.)(#3 When a non-profit corporation expenses a portion of dividend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s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es, the dividend is recognized as income.){r65<n>}

* + - * 1. [63](#1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2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 잔액이 없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3 In the case of a newly established non-profit corporation with no balance of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es)[n]

{1}(#1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세과-651, 2011.9.5.))(#2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한 목적사업이 준비금이 없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이나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비용처리 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비용 처리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3 For a newly established non-profit corporation with no balance of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es, expens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or donations for public benefit are considered to have been spent from the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to be expensed. Any amount spent beyond the scope of expense recognition cannot be expensed.){r39<n>}

* + - * 1. [6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경정청구의 관계)(#2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 설정과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청구와의 관계)(#3 Relationship between establishing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and requesting tax refunds)[n]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494, 2009.4.24.))(#2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법인이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기록한 경우에 그 금액을 비용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금 계산에 있어서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비용 처리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청구 등 사후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3 If a non-profit corporation records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in the tax reconciliation statement following the audit, that amount is considered as having been expensed. However, if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are not recognized as expenses or are under-recognized in tax calculations, they cannot be subsequently expensed through requests for tax refunds.){n}

* + - * 1. [65](#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2 고유한 목적사업의 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배당수익에 대한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3 When dividends are received by non-profit corporations where it is not possible to establish reserves for specific-purpose business, and where they are not considered as income)[n]

{1}(#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재법인-0033, 2009.1.16.))(#2 법에 따라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을 비용처리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을 의미합니다.)(#3 Refers to non-profit corporations that expense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according to the law.){r62<n>,r25<n>}

* + - * 1. [66](#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지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여부)(#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지출시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 지출 여부)(#3 Whether a non-profit organization can allocate donations that fully recognized as expenses to reserves for specific primary activities)[n]

{1}(#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38, 2009.1.12.))(#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을 비용처리한 후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한 목적 사업의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봅니다.)(#3 When a non-profit corporation expenses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and subsequently spends amounts for public benefit donations, those amounts are considered to have been used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However, donations made to schools as scholarships are considered as fully deductible donations within the limit, not deducted from the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r25<n>}

* + - * 1. [67](#1 사립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시점)(#2 사립학교법인의 고유한 목적사업 준비금 사용시점)(#3 Timing of using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for private school corporations)[n]

{1}(#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341,2006.2.14.))(#2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업에 넘긴 경우에는 이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넘기는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넘어간 후에도 수익사업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3 If a private school corporation transfers assets belonging to profit-making businesses to a non-profit business, it is considered to have been used for the non-profit business. However, if the transfer is merely nominal, and the property continues to be used for profit-making businesses or is used jointly for both profit-making businesses and non-profit business after the transfer, it is not considered to have been transferred.){r3<n>,r10<n>}

* + - 1. [68](#1 집행기준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2 집행기준 29-56-7 고유한 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3 Execution Standard 29-56-7 - Use of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n]
         1. [69](#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2 고유한 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3 Use of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n]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나 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2 고유한 목적사업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비용처리한 날의 연말 이후 5년내에 고유한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성을 감안한 단체에 기부금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이 경우 고유한 목적사업에의 사용이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must be used for the specific purpose business or as donations to organizations for public benefit within 5 years from the end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reserves were expensed. In this context, "use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 means actual expenditures for the non-profit corporation's specific purpose business, which is funded by income generated from profit-making businesses.){r70<n>}

* + - * 1. [70](#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에 대한 사례 예시))(#2 $(고유한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에 대한 사례 예시))(#3 $(Examples of the use of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69<n>}

* + 1. [72](#1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3 Special taxation regulations for interest income tax base of non-profit corporations)[n]
       1. [73](#1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특례)(#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특례)(#3 Special taxation regulations for interest income of non-profit corporations)[n]
          1. [74](#1 $(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이자소득))(#3 $(Interest income of non-profit corporations))[n]

{1}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r75<n>}

* + - * 1. [75](#1 신고납부방법과 원천징수방법 선택적용)(#2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을 주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 선택적용)(#3 You can choose between filing and paying, or having the income provider withhold and remit the tax)[n]

{1}(#1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함)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법§62).)(#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달리 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대상에 포함안된 이자소득(일부도 가능)은 이자소득 수령 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신고납부방법과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3 For interest income of non-profit corporations unlike other income, it may not be filed. In this case, the interest income that is not subject to taxation (even partially) is considered to have been withheld and paid by the payer when receiving the interest, and the reporting obligation is terminated. In other words, one can choose between the filing and withholding methods.){r74<n>}

* + - * 1. [76](#1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특례 세부규정)(#2 이자소득 신고특례 세부규정)(#3 Details of interest income filing exemption)[n]

{1}(#1 =소득세법§16①(11)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2 =법에서 정한 금전 대여의 이익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3 =The above regulations cannot be applied to profits from monetary lending specified by law.){r75<n>}

{2}(#1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99②))(#2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의 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또는 세금을 줄여달라는 신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3 =For interest income that has not been filed, tax amendments, late filings, or requests to reduce taxes cannot be made after the deadline has passed.){ r75<n>}

* + - 1. [77](#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2 이자소득만 있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세금 신고특례)(#3 Tax reporting exemption for non-profit corporations which only have interest income)[n]
         1. {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칙§82②). 이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2 이자소득만 있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3 Non-profit corporations with only interest income can file corporate tax returns using the Form No. 56 of the Enforcement Rules. In this case, attachments such as balance sheets, income statements,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statements, and tax reconciliation statements are not required.){r74<n>,r75<n>}
      2. [79](#1 예규 및 판례)(#2 예규 및 판례)(#3 Established rules and legal precedents)[n]
         1. {1}(#1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사업연도마다 선택적용 가능하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서이46012-10574, 2002.3.21.).)(#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은 이자소득을 분리 과세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매 년 선택 가능합니다.)(#3 Non-profit corporations can choose the method of separate taxation of interest income for tax collection every year.){r74<n>,r75<n>}
    1. [80](#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조특법§72))(#2 조합법인 등에 대한 간소화된 세금신고)(#3 Simplified tax filing for association corporations, etc)[n]
       1. [81](#1 당기순이익 과세특례)(#2 간소화된 세금신고)(#3 Simplified tax filing)[n]
          1. {1}(#1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특법§72① 각 호에 열거된 조합법인 등은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법인세법상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2 법에 열거된 조합법인 등은 일반적인 법인세와 달리 간소화된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간소화된 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내년부터 간소화된 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인세를 과세합니다.)(#3 Association corporations, etc., listed in the law are subject to simplified taxation, unlike regular corporate tax. However, if they choose to forgo simplified taxation, they will be subject to regular corporate tax from the following year.){r82<n>}
       2. [82](#1 법인세액 계산식)(#2 법인세액 계산식)(#3 Corporate tax calculation formula)[n]
          1. {1}(#1 법인세액＝[법인세차감 전 당기 순이익＋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법법§19의2②)･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법법§34②)＋기부금 손금불산입 (법법§24)＋접대비 손금불산입(법법§25)＋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법법§26)＋업무 무관비용 손금불산입(법법§27)＋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28)＋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법법§33)]×(9%, 12%))(#2 법인세액＝[법인세차감 전 당기 순이익＋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기부금 손금불산입＋접대비 손금불산입＋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업무 무관비용 손금불산입＋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9%, 12%))(#3 Corporate tax amount = [Net profit for the year before corporate tax deduction + Non-inclusion of bad debts in deductible expenses for guarantees and unrelated outstanding debts + Non-inclusion of donations in deductible expenses + Non-inclus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in deductible expenses + Non-inclusion of excessive expenses in deductible expenses, etc. + Unrelated expenses + Non-inclusion of interest expenses in deductible expenses + Excess of retirement benefit provision over the limit] × (9%, 12%).){r81<n>}
       3. [83](#1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시기)(#2 간소화된 과세 특례 적용시기)(#3 Application period for the simplified tax exemption)[n]
          1. {1}(#1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세율 9% 적용. 다만,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16.1.1.∼12.31.까지 합병하는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2 2020.12.31. 이전까지 세율 9% 적용. 다만, 2015.1.1.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2%를 적용합니다.)(#3 Applicable tax rate of 9% for periods before December 31, 2020. However, from the business year starting after January 1, 2015, 12% is applied to amounts exceeding 2 billion won.){r81<n>}
       4. [84](#1 $(조특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2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3 $(Range of net profit for the year on the financial statements))[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1. [86](#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4의7))(#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3 Special taxation for redevelopment associations)[n]
       1. [87](#1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조합)(#2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조합)(#3 Associations regarded as joint business places and joint entrepreneurs under the Income Tax Act)[n]
          1. {1}(#1 2003.6.30.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전환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을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 2003.6.30.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에 대하여는 전환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3 For redevelopment associations that obtained establishment approval before June 30, 2003, and subsequently registered as corporation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e Income Tax Act can be applied by considering conversion redevelopment associations and their members as joint business places and joint entrepreneurs.){r88<n>,r89<n>}
       2. [88](#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2 법인세법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조합)(#3 Associations regarded as non-profit corporations under the Corporate Tax Act)[T,r89<n>,r90<n>,r91<n>,r92<n>]
          1. {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포함))(#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포함))(#3 =Associations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including conversion redevelopment associations)){n}
          2. {2}(#1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2.1.1. 이후 설립된 조합)(#2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2.1.1. 이후 설립된 조합)(#3 =Associations established after January 1, 2022,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n}
       3. [89](#1 비수익사업)(#2 비수익사업)(#3 Non-profit business)[n]
          1. {1}(#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4③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2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3 The business of providing land and buildings to members by redevelopment associations in lieu of their original land is considered a non-profit activity.){r88<n>,r90<n>,r91<n>,r92<n>}
       4. [90](#1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고유목적사업준비금)(#3 Reserves for a specific purpose business)[n]
          1. {1}(#1 법인세법§29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2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한 목적사업의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3 Reserves for specific purpose businesses under Article 29 of the Corporate Tax Act cannot be established.){ r88<n>,r89<n>,r91<n>,r92<n>}
       5. [91](#1 2차 납세의무)(#2 2차 납세의무)(#3 Secondary tax liability)[n]
          1.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한 후,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함)를 집니다.)(#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모두 넘긴 후,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세금을 강제징수를 하여도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3 When all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cre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a redevelopment project is transferred to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if it is impossible to forcibly collect taxes from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the recipient of the remaining assets is liable for taxation.){ r88<n>,r90<n>,r89<n>,r92<n>}
       6. [92](#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3 Application period for special taxation for redevelopment associations)[T, r88<n>,r90<n>,r91<n>,r89<n>]
          1. {1}(#1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2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3 =Applied from the tax year beginning on December 30, 2003.){n}
          2. {2}(#1 =제2차 납세의무규정은 2004.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2 =제2차 납세의무규정은 2004.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3 =The secondary tax liability regulations apply from the tax year beginning on January 1, 2004.){n}
    2. [93](#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예규)(#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예규)(#3 Regulations related to special taxation for redevelopment associations)[n]
       1. [94](#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3 Application method for corporate tax special taxation for association corporations, etc)[n]
          1. {1}(#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022-법인-2970, 2022.7.28))(#2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간소화된 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사업연도의 전년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When applying the corporate tax special taxation, the net profit for the year on the financial statements is calculated by aggregating the net profit for the year of for-profit businesses and non-profit businesses according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corporate tax is reported. If you wish to forgo simplified taxation and opt for regular taxation, you must submit an application to forgo simplified taxation by the end of the year preceding the tax year in which you do not want to apply simplified taxation.){r89<n>}
       2. [95](#1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2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3 Whether the additional contribution paid by members of an association corporation for the excess of their ownership beyond what they received in distribution constitutes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es)[n]
          1. {1}(#1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 2021.06.04.))(#2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Additional contributions received by redevelopment associations from members who exceed their ownership stake do not constitute profit from for-profit businesses.){r89<n>}
  1. [96](#1 기타 사항)(#2 기타 사항)(#3 Miscellaneous)[n]
     1. [97](#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3 For organizations considered corporations, the "initial business year commencement date")[T,r3<n>]
        1. {1}(#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설립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설립일)(#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설립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설립일)(#3 =If established by law and an establishment date is determined: the establishment date.){n}
        2. {2}(#1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허가일 또는 인가일)(#2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허가일 또는 인가일)(#3 =If approval or authorization from the government authority is required: the approval date or authorization date.){n}
        3. {3}(#1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등록일)(#2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등록일)(#3 =If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authority under the law: the registration date.){n}
        4. {4}(#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기본재산을 출연 받은 날)(#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기본재산을 출연 받은 날)(#3 =Unregistered foundations with contributed basic assets for the purpose of public benefit: the date when the basic assets were contributed.){n}
        5. {5}(#1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승인일)(#2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승인일)(#3 =Organizations approved by the head of the local tax office: the date of approval.){n}
     2. [98](#1 수익사업 개시 신고)(#2 수익사업 개시 신고)(#3 Declaration of the commencement of for-profit businesses)[n]
        1. {1}(#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법§110).)(#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3 Non-profit corporations that start for-profit businesses must declare to the tax office in charge of their tax jurisdiction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for-profit businesses, along with financial statements related to the for-profit businesses.){r7<n>}
     3. [99](#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의무(법법§112의2))(#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의무)(#3 Obligation to prepare, keep, and submit a statement of issued donation receipts)[n]
        1. [100](#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의무)(#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의무)(#3 Obligation to keep a statement of issued donation receipts)[n]
           1. {1}(#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155의2에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외))(#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3 Corporations issuing donation receipts must prepare a statement of issuance by donor and keep it for 5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However, this requirement is excluded for electronic donation receipts issued after July 1, 2021.){r102<n>}
        2. [101](#1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2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3 Obligation to submit a summary of donation receipt issuances)[n]
           1. {1}(#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21.12.21. 개정).)(#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년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3 Corporations issuing donation receipts must submit a summary of donation receipt issuances to the tax office within 6 months from the end of the month in which the fiscal year ends.){ r102<n>}
        3. [102](#1 기부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규정)(#2 기부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규정)(#3 Penalty tax provisions related to donation receipts)[T,r100<n>,r101<n>]
           1. {1}(#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5)(#2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3 =If a donation receipt is issued with an incorrect amount: 5% of the incorrectly issued amount.){n}
           2. {2}(#1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2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3 =I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onor is incorrectly stated on the receipt and other cases except for subparagraph (1): 5% of the amount stated on the receipt.){n}
           3. {3}(#1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금액의 0.2%)(#3 =If statements of issuance by donors are not prepared or kept: 0.2% of the corresponding amount.){n}

<boe>